

2004년 달라지는 환경

1.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실화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선정제도(스코핑제도)가 도입된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일반항목(3개 분야 23개항목)과 사업별 중점평가항목으로 일률적으론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년도 7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를 지역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사업 지역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중요도 등에 따라 필수적인 중점평가항목 및 범위를 협의·결정토록 하였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법 제29조)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 을 위한 대행계약시 설계용역자에게 설계와 평가를 일괄하여 맡겼으나, 이번 년도 7월부터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토록 하였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법 제7조제2항)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기준이 확대된다. 작년까지 현 행 환경영향평가기준으로 환경기준(대기, 수질, 소음)만을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년도 7월부터는 생태계보 전 판단기준인 생태·자연도, 환경영향평가기준으로 추가 설정하기로 하였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법 제30조)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가 공개의무로 규정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개의무규정은 없었으나 정보공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평가관련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년도 7월부터는 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법 제6조의2)

2. 자연환경 보전

야생동·식물 보호가 강화된다. 야생동물을 밀렵·밀거래 한자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보호대상 야생동·식물에 양서·파충류를 미포함 했었다. 하지만 올해 7월(예정)부터는 밀렵·밀거래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의 종류를 지정(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하였다. 그리고 양서·파충류의 포획을 금지하는 대상을 추가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한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제도를 신설하였다. (건축물 등 신축·증축 행위, 토지형질 변경, 하천·호소 등 구조변경, 토석채취에 대한 행위 금지) 또한 시·도의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용·개발 등 행위시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신설하였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9조, 제19조, 제27조)

그리고 시·군·구에 부상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신설·운영된다. 종전에는 부상조수의 구조·치료가 영세한 민간단체에서만 운영하였는데, 이번 년도 7월부터는 부상조수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시·군·구 야

생동물구조센터 건립비 지원제도(10억원 국고지원)를 신설하게 되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0조)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자연생태 기초조사가 실시된다. 작년까지 지정된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보전기본계획 수립시에 자연생태 기초조사를 실시했는데, 올 7월부터 자연생태계보전기본계획을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특정도서 지정을 위하여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등에 대하여 자연생태 기초조사제도도 신설하게 된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6조1항)

그리고 이번 년도 7월부터 특정도서내 토지 등 매수제도를 도입한다. 효율적인 특정도서 지정·관리와 지역주민 불편해소,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토지 등을 매수규정제도로 도입하게 된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2)

또 시·도 특정도서 지정제도도 도입한다. 국가이외에도 시·도지사의 특정도서 지정·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도서명칭·위치·면적 등을 고시)(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3)



3. 대기생활환경 관리 강화

생활소음 규제강화 내용중에서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번년도 1월부터 산업단지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지역에 포함토록 하였다. 또 빌파 소음·진동 규제 완화도 빌파소음·진동의 경우에는 주간에 한하여 10dB 완화하기로 하였다. (예) 주거지역(낮) : 70dB → 80dB로 완화)

또한 공사장 소음 규제 강화는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5dB로 강화(5년후 시행)하기로 하였다. (예)주거지역(낮) : 70dB → 65dB로 강화)

오는 5월 말부터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를 강화하는데, 신축되는 공동주택내 각종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주민입주 전에 측정하여

공고하도록 하 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오염물질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 연 1회 이상 자가측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오염물질을 다량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고시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법 시행이전까지 마련 예정)(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또한 비산먼지관리도 강화된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간이 사업시행일 3일전(변경신고는 변경일 3일 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사업장인 경우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제출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번년도부터는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에 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과 고철·곡물의 보관업 및 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을 추가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간을 사업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 변경신고는 변경전(사업장의 명칭 및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까지 신고토록 하였다. 아울러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변경)서와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사업으로 건축폐기물처리업,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선실불려제조업에 한함)을 추가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2조)

4. 대기오염 저감

제작자동차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천연가스사용버스·화물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text{CO} : 4.0\text{g/kWh}$, $\text{HC} : 0.9\text{g/kWh}$)했는데, 버스는 올 1월부터, 청소차는 올 7월부터 천연가스 사용 버스·청소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디젤산화촉매장치)부착을 의무화하는 수준으로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text{CO} : 4.0 \rightarrow 0.4\text{g/kWh}$, $\text{HC} : 0.9 \rightarrow 0.2\text{g/kWh}$)을 강화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0)

그리고 올 1월부터 건설기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었는데 건설기계중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장비 제작단계에서 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0)

5. 수질오염 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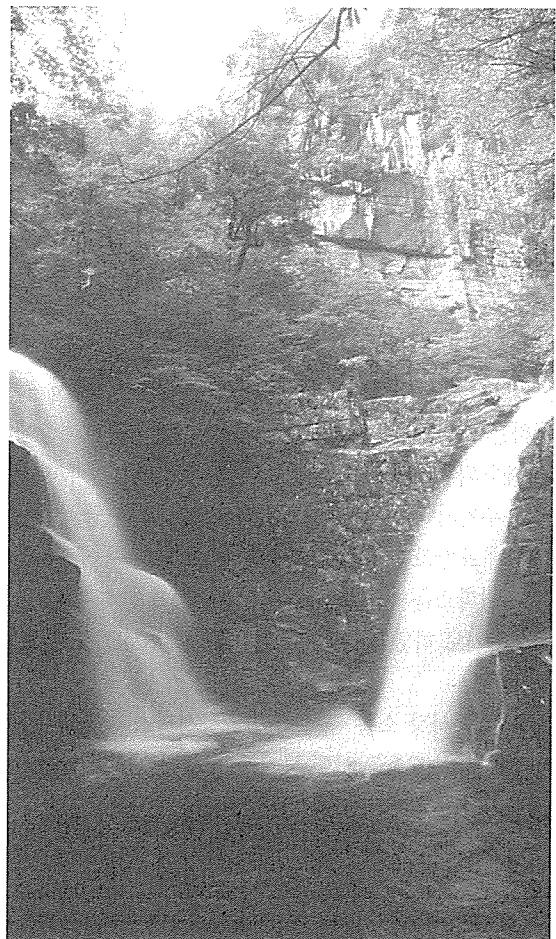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오는 8월에 시행된다. 이 제도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목표수질이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하는 것이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또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 이번년도 1월부터 조정되는데, 낙동강 수계가 1톤당 100원에서 1톤당 110원으

로,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가 1톤당 120원에서 1톤당 130원으로 조정된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30조, 제30조)

또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이 올해 1월부터 변경된다. 종전에는 6시간이었으나 24시간 균등분배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키로 하였다. (1일 100톤 이상인 경우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 설치)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그리고 단독정화조의 한국산업규격 재질기준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단독정화조 한국산업규격(KS) M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 구성부품)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 등에 관한 재질기준을 시행하게



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9조의2)

또한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지침이 종전에는 기타수질오염원인 수산물양식시설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기준을 적용(양식수조의 20% 이상의 침전시설 또는 동등이상의 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등)하였는데, 이번년도부터는 시·도지사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양식장 수질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내지 제51조)

6. 먹는물 관리 강화

오는 7월부터 먹는물 수질기준강화가 시행된다. 과잉소독 방지를 위하여 클로랄하이드레이트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규제기준을 도입시행한다.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mg/1이하,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mg/1이하,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mg/1이하,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mg/1이하, 할로아세틱애시드 0.1mg/1이하)

또한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를 위해 탁도기준이 0.5NTU에서 0.3NTU(매월 측정된 시료수의 95%이상)로 강화하는 한편, 연속자동측정장치를 사용하여 매 15분 간격으로 개별여과지에 탁도측정을 의무화하였다. (※ 시설용량이 1일 100,000톤 이상인 정수장에 적용)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또한 먹는 샘물·정수기 등 먹는 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지도·관리권한 지방이양된다. 종전에는 먹는 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업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하였는데 올 7월부터는 먹는 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제조 및 수입판매업과 관련하여 샘물개발허가 등 34개 사무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 미납업체에 대한 제재수단 미비에 대해서도 올 7월부터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이상 납부하지 않은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절차 완료전 수입검사를 거부할 있고, 국내제조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증명표지 사용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먹는물관리법)

7.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이번년도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TV, 냉장고, 컴퓨터, 타이어 등의 제품과 종이팩·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포장재 등에 대하여 재활용의무부과에 있어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필름류 플라스틱포장재, 형광등을 추가하게 되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또한 분리배출표시제도가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대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표시제도 도입(2003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였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대하여 분리배출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그리고 올해부터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에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2003년 9월 4일))

8. 환경신기술 개발·보급

환경신기술 현장보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올 1월부터 확대되었다.

종전에는 '환경기술발전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 (환경부 훈령, 2000년 9월 제정)에 따라 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환경시설 공사에만 입찰가점 부여, 시공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주었는데 이번년도부터는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는 환경신기술 보유업체에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환경신기술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효과를 위해 환경신기술표지('ET' 마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환경신기술 취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 4)